

순환경제 목표 설정을 위한 비율의 산정방법(제8조 관련)

1. 폐기물발생감량률

가. 계산식

- 1) 「폐기물관리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생활폐기물(이하 "생활폐기물"이라 한다)의 발생감량률(%) =

$$\frac{\text{해당연도 인구당 생활폐기물 발생량(kg/인)}}{\text{기준연도 인구당 생활폐기물 발생량(kg/인)}} \times 100$$

- 2) 「폐기물관리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(이하 "사업장폐기물"이라 한다)의 발생감량률(%) =

$$\frac{\text{해당연도 국내총생산액당 사업장폐기물 발생량(톤/십억원)}}{\text{기준연도 국내총생산액당 사업장폐기물 발생량(톤/십억원)}} \times 100$$

나. 산정기준

- 1) 기준연도는 2020년도로 한다.
- 2) 인구는 「주민등록법」 제6조에 따라 주민등록을 한 사람의 수와 「출입국관리법」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의 수의 합으로 한다.
- 3) 생활폐기물 발생량 및 사업장폐기물 발생량은 제6조제2호가목의 폐기물 종류별 발생 현황에 관한 조사 결과에 따른다.

2. 최종처분율

가. 계산식

$$\text{최종처분율(}\%) = \frac{\text{최종처분량(톤)}}{\text{폐기물 발생량(톤) + 순환자원 인정량(톤)}} \times 100$$

나. 산정기준

- 1) 최종처분량은 폐기물을 「폐기물관리법」 제2조제6호에 따른 소각, 중화 등의 중간처분 또는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재활용 과정(이하 이 표에서 "중간처리과정"이라 한다)을 거치지 않고 바로 최종처분[매립하거나 해역(海域)으로 배출하는 것을 말한다. 이하 이 표에서 같다]하는 직접최종처분량과 중간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잔재물(오수 또는 폐수를 포함한다. 이하 이 표에서 같다)을 최종처분하는 간접최종처분량을 더하여 산출한다.
- 2) 직접최종처분량은 「폐기물관리법」 제2조제8호에 따른 최종처분시설(이

하 이 표에서 “최종처분시설”이라 한다)에 반입되는 양을 기준으로 산출한다.

- 3) 간접최종처분량은 중간처리과정을 거친 후의 잔재물 처리 현황자료를 참고하여 산출하되, 최종처분시설에 반입되는 양을 기준으로 한다.
- 4) 순환자원 인정량은 법 제21조 또는 제23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 인정하거나 지정·고시한 순환자원의 생산량으로 한다. 다만, 「폐기물관리법」 제2조제7호에 따른 재활용 과정(이하 이 표에서 “재활용 과정”이라 한다)을 거쳐 순환자원으로 인정받거나 지정·고시한 양은 제외한다.
- 5) 폐기물 발생량은 연간 발생한 폐기물의 총량으로 산출하되, 폐기물을 중간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잔재물의 양은 포함하지 않는다. 다만, 중간처리하는 과정에서 원료·재료 또는 연료가 추가로 투입되어 그 투입된 원료·재료 또는 연료가 폐기물이 된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양을 폐기물 발생량에 포함한다.

$$\text{추가 발생량} = \frac{A}{B} \times C$$

A: 추가로 투입된 원료·재료 또는 연료의 양

B: 중간처리과정에 투입된 폐기물의 양 + 추가로 투입된 원료·재료 또는 연료의 양

C: 잔재물 발생량

3. 순환이용률

가. 계산식

$$\text{순환이용률(\%)} = \frac{\text{실질재활용량(톤)} + \text{순환자원 인정량(톤)}}{\text{폐기물 발생량(톤)} + \text{순환자원 인정량(톤)}} \times 100$$

나. 산정기준

- 1) 실질재활용량은 재활용 양에서 재활용 과정 전에 이루어지는 전처리 과정 및 재활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잔재물의 양을 제외하여 산출한다. 이 경우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- 2) 순환자원 인정량 및 폐기물 발생량의 산정기준은 각각 제2호나목4) 및 5)와 같다.

4. 에너지회수율

가. 계산식

$$\text{에너지 회수율(\%)} = \frac{\text{에너지화된 폐기물량(톤)}}{\text{에너지화 가용 폐기물 발생량(톤)}} \times 100$$

나. 산정기준

- 1) 에너지화된 폐기물량은 「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」 별표 4의2 제5호에 따라 에너지를 직접 회수할 목적으로 시멘트 소성로, 소각열회수시설 등에 직접 투입하거나 고형연료제품, 정제연료유 등 에너지를 회수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든 폐기물의 양으로 산출한다. 다만, 에너지를 회수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과정에서 발생한 잔재물의 양은 제외한다.
- 2) 에너지화 가용폐기물 발생량은 가연성 폐기물의 발생량을 말한다.